

기관추천 특별공급(이수 스위첸 포레힐즈)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공 급 명 : 이수 스위첸 포레힐즈
- 공급위치 :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15층 아파트 7개동 총 366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총 34세대중 4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괄호안의 수는 예비자 수)

구분		59B	합계
일반 (기관추천)	서울시장애인	1(2)	1(2)
	국가유공자	1(2)	1(2)
	중소기업근로자	1(2)	1(2)
	장기복무군인	1(2)	1(2)
	계	4(8)	4(8)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85㎡ 이하 세대수의 10% 범위 내 특별공급 예정입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2에 의거 84㎡이상 타입(9억원 초과 주택) 배정은 없습니다.
- ※ 배정세대에 대한 추천 및 예비 추천 세대수에 맞게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구분	예정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19. 10. 11(예정)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http://www.switzen.com)
건본주택 개관	2019. 10. 18(예정)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97-16번지 일대
특별공급 접수일정	인터넷 접수 주택전시관 방문 2019. 10. 22(예정)	18.05.04 개정된 제도를 적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인터넷 취약자는 주택전시관 방문접수가 가능하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19. 10. 31(예정)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https://www.apt2you.com) 및 당사 홈페이지 (http://www.switzen.com)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자격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시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 공급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권(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당첨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당첨일로부터 5년), 과밀억제권역85㎡초과(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85㎡이하(당첨일로부터 3년), 과밀억제권역 외85㎡초과(당첨일로부터 1년)
- ※ 청약 제한사항(과거 당첨사실등) 조회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낙첨자 잔여세대 배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 유형별,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계약 취소, 부적격 세대로 확정되어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되며 예비 입주자 계약 이후에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관련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또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대상 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기관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됨.
※ 해당 기관 추천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며,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추천 바람.
 - 입주자 선정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기관추천 예비입주자는 배정량의 140%,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배정량의 500% 선정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건설지역인 서울시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 [타지역에서 당해지역으로 직장 근무처 이동에 따른 이주자(종사자)에 대하여는 예외,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 행정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우선순위에 따라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금융결제원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의 전산검색결과(주택소유여부 등)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당사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만일 소명 불가시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 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사항은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1. 대상자 명단양식

타입	번호	유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비고
59B	1	장애인	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	
59B	예비1	장애인				
59B	1	국가유공자				
59B	예비1	국가유공자				

- ※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추천인 명단도 동시에 추천바랍니다.(예비추천인 명단 배정시)
- ※ 예비추천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
- ※ 상기번호는 추천 순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